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.과소한 통.리.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

다. 주요내용

- 10개통 증설(안 별표7, 별표14, 별표25)
 - 통.리 : 610개 통리(통 439, 리 171)
→ 620개 통리(통 448, 리 172)
 - 산동면 (증 1개리) : 공단조성 택지완료(봉산리→봉산1리, 봉산2리)
 - 전주원남동 (증 2개통) : 과밀통 분리 (49통, 50통)
 - 인동동 (증 7개통) : 과밀통 분리 (65통 ~ 69통),
영무예다음2차 신축(70통 ~ 71통)
- 48개반 증설, 16개반 폐지(안 별표7, 별표9, 별표14, 별표20, 별표24, 별표25)

- 반 : 4,406개 반 → **4,438개 반 (32개 반 증)**
 - 산동면(증2, 감1) : 공단조성으로 택지개발 완료
 - 송정동(증3) : 송정 태왕아너스 신축
 - 선주원남동(증1) : 과밀통 분리
 - 인동동(증42, 감15) : 과밀통 분리, 영무예다음 2차 신축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.과소한 통.리.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통리는 610개 통리에서 산동면 1개, 선주원남동 2개, 인동동 7개 통리의 증설로 620개 통리로 조정하였고,
- 반은 4,406개 반에서 48개 반 증설, 16개 반 폐지로 32개 반이 증가된 4,438개 반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